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합54569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6. 4. 28.

판결 선고2016. 6.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228,149,513원 및 그 중 227,495,8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228,149,513원 중 81,654,297원 및 그 중 81,000,644원에 대하여

각 2015. 5. 28.부터 2015. 8.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78,253,5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178,2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 2보증의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아래 표의 보증기한까지로 연장되었다.

2010. 4. 22.	F	2015. 4. 17.	80,000,000원(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 한다
2010. 10. 19.	G	2015. 10. 16.	85,000,000원(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보증'라 한다
2014. 9. 17.	H	2015. 9. 17.	59,500,000원(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3보증'이라 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보증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중소기업은행은 2015. 2. 17. 피고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8. 중소기업은행에 227,683,432원(이 사건 제1보증 채무 81,188,216원 + 제2보증 채무 86,152,273원 + 제3보증 채무 60,342,9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 사건 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으로 81,000,644원, 총 대위변제금 잔액으로 227,495,860원(이 사건 제1보증 81,000,644원 + 제2보증 86,152,273원 + 제3보증 60,342,943원)이 남아있다.
-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고, 이 사건 제1보증과 관련하여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53원이다.
- 5)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075,200원이고, 현재 그 잔액으로 653,50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 C,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①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228,149,513원(대위변제금 잔액 227,495,860원 + 이 사건 제1보증 확정지연손해금 153원 + 법적절차비용 653,5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27,495,860원에 대하여, ② 피고 C, D은 피고 회사, B와 연대하여 위 228,149,513원 중 81,654,297원(이 사건 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81,000,644원 + 제1보증 확정지연손해금 153원 + 법적절차비용 653,5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1,000,644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 2015. 5.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8. 23.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E은 2014. 11. 17.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억 5,00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2. 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5620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피고 B가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2015. 2. 17.부터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5. 28. 중소기업은행에 227,683,43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피고 B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5. 5. 28.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이후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 각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변제하고 2014. 11. 26. 위 근저당권들을 모두 말소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5. 11. 16.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78,253,50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I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78,253,500원에서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 1억원을 공제한 잔액 178,253,5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178,2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E은 선의의 수익자다.

① 피고 E은 영농후계인으로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매매 당시 피고

B의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다. ②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매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 B는 당초에 이 사건 토지를 싼 가격에 매수하였고, 시가대로 매도할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된

기간이 짧아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낮은 가격에 매매한 것이다. ③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복숭아 나무들은 모두 생산성이 없어 철거해야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가격은 1억 8,000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피고 E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도 아니다. ④ 피고 B가 서울에 살았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 E이 피고 B의 구체적 채무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다. ⑤ 이 사건 토지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 별다른 담보권,

보전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들만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압류나 다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서울에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거주하였던 피고 E과는 다른 지역에 살았다. ③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③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E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 E은 스스로 이 사건 매매대금인 1억 5,000만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낮게 판매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④ 감정인 I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인접한 2014. 12. 1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76,261,500원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은 그 보다 약 1억 2,000만원이나 낮게 결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1억 6,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에 형성되었다는 을마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⑤ 피고 B,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1개라고 생각하고 계약금 5,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1개가 아닌 2개임을 확인한 뒤에 피고 B는 피고 E에게 다른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중도금 5,000만원을 미리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피고 B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자금을 모두 피고 E에게 요구하였는데, 피고 E의 입장에서 피고 B의 자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⑥ 피고 B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 E은 망설이다가 피고 B의 설득 끝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을마 제5호증 참조).

⑦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5,000만원으로 같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잔금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범준

판사강민정

판사강동훈

별지

1)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4.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2014.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이후임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2014.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